

2023년

세법개정안

경제활력과 민생안정, 합리적 세제로 뒷받침하겠습니다.



1. 경제활력 제고

- 투자·고용 촉진
- 기업경쟁력 제고
- 창업·벤처 활성화

2. 민생경제 회복

-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3. 미래 대비

- 결혼·출산·양육 지원
- 청년 자산형성 및 노후대비
- 지역균형 발전

4.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 납세자 권익 보호
- 세원관리 강화

경제활력 제고



1 투자·고용을 촉진합니다.

01 영상콘텐츠 투자 세제지원 확대

공제율(%)	현행	개정안		최대공제율
		기본공제 상향 +	추가공제 신설	
대기업	3	5	10	15
중견기업	7	10	10	20
중소기업	10	15	15	30

* 추가공제 : 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등 대상으로 추가공제 10/15% 적용
예) 총 제작비용 중 국내지출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인 영상콘텐츠 등

02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확대

구분	현행	개정안
국가전략기술	반도체, 배터리,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이동수단 등 6개 분야 54개 기술	바이오헬스 분야 추가 (23.7.1. 이후 지출·투자분부터 적용)
신성장원천기술	미래차 등 13개 분야 262개 기술	에너지효율 향상 , 핵심광물 등 공급망 관련 필수기술 추가

03 유턴기업 세제지원 확대

구분	현행	개정안
세액감면 확대	5년 100% + 2년 50% 감면	7년 100% + 3년 50% 감면
업종요건 완화	국외사업장과 국내복귀사업장 간 업종 세분류 동일	관련 전문위원회의 업종 유사성 확인시에도 인정

04 원양어선·외항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한도 확대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과세 한도	월 300만원	월 500만원

2 기업 경쟁력을 뒷받침합니다.

01 가업승계 세부담 완화

구분	현행		개정안	
	증여재산가액(억원)	세율(%)	증여재산가액(억원)	세율(%)
증여세 저율과세기간 상향	0~10 이하	0(기본공제)	0~10 이하	0(기본공제)
	10~60 이하	10	10~60 이하	10
	60~300 이하	20	60~300 이하	20
	300~600 이하		300~600 이하	20
연부연납 기간확대	5년		20년	
사후관리 기간 업종변경 완화*	중분류 내 변경 허용		대분류 내 변경 허용	

* 가업상속공제도 해당

02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신설

구분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
현행	채권잔액 × 대손실적율과 1% 중 큰 비율
개정안	해당 대여금* × 대손충당금 손금산입비율(24년부터 매년 10% 상향) * 국내 건설모회사가 해외건설자회사에 사업용으로 대여한 것으로서 사실상 회수가 곤란한 대여금

3 창업·벤처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01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과세 한도	연 500만원	연 700만원 단, 지배주주등 제외

02 민간벤처모펀드 활성화 세제지원

출자 단계	법인 투자자	민간벤처모펀드를 통한 벤처기업 출자시 Max(벤처기업 출자금액, 벤처모펀드 투자금의 60%)의 5% + 증가분 3% 세액공제
	개인 투자자	민간벤처모펀드 출자금액 10% 소득공제
운용 단계	민간벤처모펀드 운용사(창업투자회사,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가 모펀드에 제공하는 자산관리·운용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회수 단계	모펀드 출자로 취득한 창업·벤처기업 주식·지분의 양도차익 비과세	

민생경제 회복



1 서민·중산층 세부담을 완화합니다.

01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구분	현행			개정안				
	상환기간	고정 + 비거치	고정 또는 비거치	기타	고정 또는 비거치	고정 또는 비거치	기타	고정 또는 비거치
상환방식	15년 이상	고정 + 비거치	고정 또는 비거치	기타	고정 또는 비거치	고정 또는 비거치	기타	고정 또는 비거치
공제한도(만원)	1,800	1,500	500	300	2,000	1,800	800	600
주택가격	5억원 이하			6억원 이하				

02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구분	현행	개정안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	연 240만원	연 300만원

03 전통시장·문화비 사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소득공제율(%)	현행	개정안
전통시장	40	40 (23.4.1.~12.31. 사용분 50)
문화비 지출	30	30 (23.4.1.~12.31. 사용분 40)

04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구분	현행	개정안
고액기부 세액공제율 상향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	3천만원 초과 기부금 40%
용역기부 기부금 인정 확대	기부금 인정대상 특별재난지역 용역가액 1일 5만원	국가·지자체·학교·병원 등 특례기부금 대상 단체 1일 8만원

05 반려동물 다빈도 질병의 진료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23.10.1. 시행)

구분	현행	개정안
부가가치세 면세하는 동물 진료용역	①가축 및 수산물, ②장애인보조견, ③기초생활수급자 반려동물 ④질병 예방 목적인 예방접종, 약, 수술, 병리학적 검사	100여개 다빈도 질병 치료 추가 (외이염, 결막염, 개 아토피성 피부염, 무릎뼈 안쪽 탈구 등)

2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지원합니다.

01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

구분	현행	개정안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기본한도(A) + 수입금액별 한도(B)	
	A: 중소기업 3,600만원 일반기업 1,200만원	
	B: 수입금액 구간	한도
	100억원 이하	0.3%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0.2%
	500억원 초과	0.03%

전통시장 지출 기업업무추진비는
(기본한도 + 수입금액별 한도)의
10% 추가 손금산입

02 영세 자영업자 지원 부가가치세 등 특례 연장

구분	내용	적용기한
면세 농산물 등 의제매입 세액공제	연 매출액 4억원 이하 개인음식점 공제를 확대 8/108 → 9/109	3년 연장 (~'26.12.31.)
신용카드 등 사용 세액공제 우대 특례	연 매출액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 공제율 우대 1.0% → 1.3%, 공제한도 상향 500만원 → 1,000만원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	부가가치세 99% 경감 (90% 운수종사자 현금 지급, 5% 감차지원, 4% 운수종사자 복지기금재원 활용)	
택시연료(LPG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액 중 40원/kg 감면	

미래 대비

1 결혼·출산·양육을 지원합니다.

01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증여재산 공제한도	현행	개정안
배우자	6억원	(좌동)
직계존속→직계비속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 혼인공제 1억원
직계비속→직계존속	5천만원	(좌동)
기타친족	1천만원	(좌동)

*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총 4년간)에 증여받은 경우

02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구분	현행	개정안
지급대상	소득상한 4,000만원	소득상한 7,000만원
최대지급액	자녀 1인당 80만원	자녀 1인당 100만원

03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및 근로자 출산·양육 지원금액 손금·필요경비 인정 근거 마련

구분	현행	개정안
근로자	출산·보육수당 월 10만원 비과세	출산·보육수당 월 20만원 비과세
기업	출산·양육 지원금 관련 규정 없음	출산·양육 지원금 손금인정 근거 마련

* 출산·보육수당 :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

04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의료비 세액공제*	현행	개정안
6세이하 의료비	한도 700만원	한도 폐지
산후조리비용 (한도 200만원)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	모든 근로자

* 의료비 세액공제 : 총급여액 3%를 초과하는 의료비 15% 세액공제

2 청년 자산형성과 노후대비를 지원합니다.

01 청년 자산형성 지원 조세특례 연장

구분	내용	적용기한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납입금액 40% 소득공제 (납입금액 연 600만원)	1년 연장 (~'24.12.31.)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군 복무기간 중 가입 저축시 이자소득 비과세 (납입금액 월 40만원)	3년 연장 (~'26.12.31.)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비과세	무주택 청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500만원 한도)	2년 연장 (~'25.12.31.)

02 노후 연금소득 세부담 완화

구분	현행	개정안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연 1,200만원	연 1,500만원

* 연금 수령액에 대해 3~5% 저율 분리과세 선택 가능

3 지역균형 발전을 지원합니다.

01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이전 단계	특구 이전기업·주민에 대한 양도세 등 과세특례 부여
운영 단계	특구 내 창업·사업장 신설 시 소득세·법인세 감면
투자 단계	기회발전특구펀드 일정기간 이상 투자 시 이자·배당소득 에 대한 세제혜택

02 농어촌특별세 유효기간 10년 연장 ('24.6월 → '34.6월)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1 납세자 권익을 보호합니다.

01 조세불복 청구 소액사건 범위 확대

구분	현행	개정안
소액사건 범위	3,000만원 미만	5,000만원 미만

* 소액사건은 국세심사위원회 의결 생략 또는 조세심판관 단독처리 가능

02 수정신고시 관세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 확대

가산세 감면율(%)	현행	개정안
보정기간 경과 후 6개월	20	30
6개월 ~ 1년	10	20
1년 ~ 1년 6개월	10	(좌동)

* 보정기간 : 신고납부일부터 6개월

2 세원관리를 강화합니다.

01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 부여

구분	현행	개정안
거주자·내국법인의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	(신설)	해외신탁 설정 또는 해외신탁 재산 이전시 위탁자는 건별 1회 자료 제출 해외신탁 설정 이후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시 위탁자는 매년 자료 제출

02 해외 주식기준보상 거래내역 자료제출의무 부여

구분	현행	개정안
임직원의 국외 주식기준보상 거래내역 등 자료 제출의무	(신설)	내국법인/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은 임직원이 외국모법인 으로부터 받은 주식기준보상 거래내역 등 제출

* 주식기준보상 : 주식매수선택권, 주식 및 주식가치에 상응하는 금전으로 지급받는 상여금

03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

구분	현행	개정안
대상 업종	변호사, 병·의원 등 125개 업종	여행사업, 앰블런스 서비스업 등 13개 업종 추가